

예산총칙

2024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964,984,010	28,949,520
일반회계	905,183,285	27,155,499
특별회계	59,800,725	1,794,022
공기업특별회계	38,644,602	1,159,338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3,468,920	704,068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5,175,682	455,270
기타특별회계	21,156,123	634,68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5,300,418	159,013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116,710	93,501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2,331,400	69,942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	3,146,630	94,399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1,532,326	45,970
사천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627,389	18,822
도시개발특별회계	12,503	375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2,019,813	60,594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	18,739	562
농어촌발전자금특별회계	2,376,358	71,291
지하수관리특별회계	673,837	20,215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41,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